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70
----------	-------

제안연월일 : 2026. 5.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소위 심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48	강대식의원 등 10인	'24.7.16.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14	박용갑의원 등 12인	'25.8.2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5.11.18.)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11	이건태의원 등 10인	'25.9.1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5.11.18.)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75	엄태영의원 등 10인	'25.11.4.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6.2.10.)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90	김은혜의원 등 11인	'25.11.25.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7.)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62	정점식의원 등 10인	'25.12.31.	-	소위원회 직접회부('26.3.27.)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15.)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6.)는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 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철도의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향함(안 제79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3호 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이하 “약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

제41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행위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명령으로”를 “명령, 제45조의2에 따른 행위나 제한으로”로 한다.

제7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1조 본문 중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9조의2 또는 제80조(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2조제2항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제7호의3부터 제7호의

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

제82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가중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선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로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6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생략)</p> <p>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9.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1.·2. (생략)</p> <p>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p>	<p>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p> <p>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 ----- ----- ----- -----말하 며, 이하 “약물”이라 한다----- -----</p>

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생략)

<신설>

<신설>

④ (생략)

<신설>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2. (현행과 같음)

④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 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5조의2(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

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행위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 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 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 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6. ~ 8.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손실보상) ① -----

-----명령, 제45조의2에 따
른 행위나 제한으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③ -----

-----.

1. ~ 14. (생략)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 19. (생략)

④ · ⑤ (생략)

<신설>

1. ~ 14. (현행과 같음)

<삭제>

16. ~ 19.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
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
한 확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음
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
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
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

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80조(형의 가중) <신 설>

제80조(형의 가중)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4

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

<신 설>

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신설>

7의2. ~ 7의4. (생략)

8. ~ 1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⑤ · ⑥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

7의3. ~ 7의5. (현행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와 같음)

8.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